

학생생활 규정

개정 2019.05.22. 개정 2020.04.28. 개정 2022.03.17. 개정 2024.03.01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"본교"라 칭한다)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제반 생활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)

학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과 이 규정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.

제2장 학생증

제3조 (발급)

- ① 학생증은 매 학년 초에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학생팀에서 발급한다.<개정 2019.05.22., 2020.04.28>
- ② 학생증을 분실 또는 오손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학생팀에 재발급 신청한다.<개정 2019.05.22., 2020.04.28>

제4조 (소지 및 용도)

- ①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본교 교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학생증은 학생신분증, 도서 대출용을 겸용한다.

제5조 (유효기간)

학생증의 유효기간은 본교 재학기간으로 한다.

제6조 (발급명의)

학생증은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.

제7조 (무효 및 회수)

- ① 학생증은 당해 학생이 졸업, 퇴학 및 제적되었을 때 무효가 된다.
- ② <삭제 2019.05.22.>

제8조 <삭제 2019.05.22.>

제3장 학생생활기록카드

제9조 (작성)

입학, 복학 및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생생활기록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카드보관)

작성된 학생생활기록카드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학생이 개별 입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5.22.>

제11조 <삭제 2019.05.22.>

제4장 학생규율

제12조 (품위유지)

학생은 본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행사참여)

본교에서 실시하는 제반 행사에 출석율이 낮은 학생에게는 장학혜택 및 학자금융자 추천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4조 (시설사용)

- ① 학생이 학내시설 및 교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05.22.>
- ② 시설 및 교구 사용 중 파손 또는 재산 손실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알려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.<개정 2019.05.22.>

제5장 상 별

제1절 포 상

제15조 (포상의 종류)

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창한다.

- ① 성적우수상 : 학사과정 전 기간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- ② 선행상 : 학내외에서 특별한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
- ③ 공로상 : 학생활동에 있어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
- ④ 기 타 : 기타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(문화상, 봉사상 등)<개정 2019.05.22.>

제16조 (추천 및 선발)

- ① 제15조 ①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표창한다.<개정 2019.05.22., 2022.03.17.>
- ② 제15조 ②~④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표창한다. <개정 2022.03.17., 2024.03.01.>
-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. <조항 변경 ②→③ 2022.03.17.>

제17조 (포상시기)

포상은 입학 및 졸업식 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18조 (기록)

포상사항은 학적부에 기재한다.

제2절 징 계

제19조 (징계의 종류 및 기간)

- ① 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한다.
- ② 징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근신은 3일이상 7일이내로 한다.
 2. 유기정학은 7일이상 14일이내로 한다.
 3. 무기정학은 30일이상으로 한다.

제20조 (근신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한다.

1.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동을 한 자
2. 학내외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
3. 고의로 학내의 환경을 오손한 자
4. 인권침해 행위¹⁾를 한 자 및 집단활동 연대책임자 <신설2016.07.19.>
5.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

제21조 (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.

1. 근신을 2회이상 받은 자
2. 학우를 협박 또는 폭행한 자
3.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자
4. 학내외에서 음주 난동한 자
5. 허가없이 금품을 징수한 자
6. 교직원의 교육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
7. 각종 불법단체에 가담 또는 찬동 지지하는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
8. 단체행사를 고의로 방해한 자
9. 고의로 학교시설물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한 자
10.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
11. 총장실, 행정실 등의 점거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킨 주동자
12. 인권침해 행위¹⁾를 한 자 및 집단활동 연대책임자 <신설2016.07.19.>
13.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

제22조 (제적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에 처한다.

1. 유기 또는 무기정학을 2회이상 받은 자
2. 정치활동을 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선동하는 자
3.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
4.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5.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생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 자
6. 불온 단체를 조직하거나 불법집회를 한 자
7. 학내외에서 불온 인쇄물을 만들거나 배포한 자
8.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
9. 학내외에서 대학의 명예를 심히 훼손시킨 자
10. 인권침해 행위¹⁾를 한 자 및 집단활동 연대책임자 <신설2016.07.19.>
11.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

제23조 (징계의 발의)

① 제20조, 제21조, 제2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학생처장의 발의로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한다.<개정 2019.05.22., 2022.03.17., 2024.03.01.>

② 징계를 발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1. 사건경위서 1부

1) 인권침해행위란 대학의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, 문자·언어적 가해행위,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

2. 본인진술서 1부(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)
3. 지도교수 의견서 1부

제24조 (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)

- ①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유기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한다.

제25조 (징계의 감면 및 해제)

- ① 총장은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선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.
- ② 무기정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징계해제의견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<개정 2019.05.22., 2022.03.17., 2024.03.01.>

제26조 (기록 및 공고)

징계사항은 학적부에 이를 기재하고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22.03.17.>

제3절 학생징계위원회

제27조 <삭제 2019.05.22.>

제28조 <삭제 2019.05.22.>

제29조 <삭제 2019.05.22.>

제30조 <삭제 2019.05.22.>

제31조 <삭제 2019.05.22.>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8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